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내

2024.06.14

2024. 6. 3.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2024. 1. 30.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과 합하여 “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자기주식 제도에 대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 기업성과의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및 사자주 취득 및 처분 시 공시의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또는 이전의 제한(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내용)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해당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상장법인의 합병 시 존속법인이 보유한 소멸법인의 주식 및 소멸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배정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되는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상 효과) 현행 규정 하에서는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되는 상장법인 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령 및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습니 다. 이 에 따라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관행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의 신주가 배정되어 왔습니 다. 또한 인적분할

시 분할되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발행되는 신주 및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승계법인에게 이전되는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편법적으로 강화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 합병의 경우에도 존속법인이 보유한 소멸법인의 주식 및 소멸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합병신주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실무상 혼란이 존재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또는 합병 시 위와 같은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및 분할신설법인, 분할승계법인으로의 자기주식 승계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을 통한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실무상 존재하였던 위와 같은 자기주식 제도 관련 실무상 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일정규모 이상 자기주식 보유 시 공시의무 부과(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2 제6항, 규정 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내용)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에 관한 보고서(자기주식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추가 자기주식 취득계획, 자기주식 소각 및 처분계획 등)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 효과) 현행 법령 하에서는 자기주식 보유 및 처리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고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기주식 처분 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강화(규정 개정안 제5-1조 제2호, 제5-2조 제3호)

(내용)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처분목적, 처분상대방과 그 선정사유, 처분가격의 산정근거, 일반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 효과) 현행 법령 하에서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그 처분목적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의무 확대로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여 일반주주의 권익 및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기주식 신탁취득 등에 대한 규제차익 해소(규정 개정안 제5-2조, 제5-4조, 제5-10조)

(내용)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신탁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초 계획 및 공시된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신규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상장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과 그 선정사유, 처분가격의 산정근거,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예상 효과) 현행 법령 하에서는 상장법인이 신탁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처분에 대한 공시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탁방식을 악용할 여지가 있었으나,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신탁방식을 이용할 유인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24. 6. 4. ~ 2024. 7. 16.에 걸쳐 실시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구성원

김병태

변호사

02-316-4038

btkim@shinkim.com

안혜성

변호사

02-316-4700

hseahn@shinkim.com

성건우

변호사

02-316-1663

gwsung@shinkim.com